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6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김기현·최은석·김 건

최수진 · 안상훈 · 유용원

송언석 · 이만희 · 임종득

윤상현 · 서천호 · 박충권

유영하 • 박성민 • 박대출

이달희 • 한기호 • 엄태영

김대식 · 김석기 · 정연욱

조승환 · 박수민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9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탄핵소추안이 국회 다수당의 주도하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해

당 공직자의 직무는 최장 180일(6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업무 기능의 마비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국가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2(탄핵소추의 요건) 탄핵의 소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대양 및 직무와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어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일 것
 - 2.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여 단순 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경우가 아닐 것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제53조의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탄핵심판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서면심리 후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 1.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

님이 명백한 경우

2. 제48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탄핵소추의 요건) 탄핵의 소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등 구체적 태양 및 직무와의관련성등이 특정되어 심판대상을 확정할수 있을 정도로사실관계가 구체적일 것은 단핵 사유에 해당되는행위에 대한 소명이현저히 부족하여 단순한의혹제기에 불과한경우가아닐 것은 기가 아닐 것은 기가 가는 기가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제53조(결정의 내용) <u><신 설></u>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헌법재 판소는 심판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리 후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1.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
	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
	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제48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u>갖추지 못한 경우</u>
<u>①</u> (생 략)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